

이천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규정

소관부서 : 관광과

제정 2003· 8· 14 훈령 제135호
개정 2007· 7· 2 훈령 제177호
일부개정 2015· 4· 21 훈령 제240호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천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의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 육성하여 관광진흥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천시관광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· 4· 21>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천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· 4· 21>

1. 관광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업체간 단일 목표설정 추진에 관한 사항
3. 자연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개발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
4. 공동 홍보물 제작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
5.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
6. 관광진흥을 위한 민간업체 지원에 관한 사항
7. 각종 관광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대안제시
8.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삭제 < 2015· 4· 21>

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 <개정 2015· 4· 21>

1. 도의회 의원이나 시의회 의원 중 2명
2. 관광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 인사
3. 관계 공무원

- 4. 지역관광에 조예가 깊은 학계인사
- 5. 관광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전문가

제4조(위원의 임기 및 해촉) 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
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, 그 이외 위원
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4·21>

② 위원은 본인의 원에 의하거나 질병, 장기출타 및 품위손상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으며,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
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둔다. <개정 2015·4·21>

② 간사는 담당과장이 되고, 서기는 담당팀장이 된다. <개정 2007·7·2, 2015·4·21>

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.

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한다. <개정 2015·4·21>

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및 부의 사항을 7일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 본인이 심의내용과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다.

⑥ 전항에 대한 기준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제8조(소위원회의 구성)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능률적인 협의를 위하여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7·7·2>

[전문개정 2015·4·21]

제9조(수당등)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15·4·21>

제10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5·4·21]

부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·7·2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2015·4·21 훈령 제240호>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